**멀티미디어 기자재 대여 지침**

**제1조. (대여자격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대여할 수 있다.**

1. 본교 강사 이상의 교원 및 직원
2. 본교 대학 및 각 대학원 재학생, 휴학생(조교와 연구생을 포함한다)

**제2조. (대출 수량 및 기간, 대여 중지)**

1. 멀티미디어 기자재 대여는 2일 이전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당일 신청도 허용한다.
2. 멀티미디어 기자재 장기 대여 기간은 학기 이내이며, 단기 대여는 5일(120시간)을 초과하여 대여할 수 없고, 반납 후 5일간 재대여를 금지한다.

단, 장기 대여의 경우 개강 전 멀티미디어 시스템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한다.

1. 대여 기간의 만료 시간이 공휴일 및 주말일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 연장한다.
2. 대여 기간을 초과한 경우 1회 회수로 간주하여, 최종 대여일로부터 1개월 대여 정지, 2회 시 6개월 대여 정지, 3회 이상일 경우 영구 대여를 정지한다.
3. 수업, 세미나 등 행사와 관련 대여 사용시는 교원 또는 행정 부서의 책임하에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.
4. 대여는 원격교육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사용신청서를 작성한 후 가능하다.
5. 멀티미디어 기자재는 다음의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에는 대여를 중지한다.

- 재 학 생: 매 학기 등록 개시일 14일전

- 졸업예정자: 졸업예정일 20일전

**제3조. (퇴직자 등의 반납)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여자는 지체 없이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반납하여야 한다.**

1. 휴직, 정직 및 퇴직
2. 1개월 이상의 외국여행
3. 졸업, 수료 및 휴학

**제4조. (긴급회수) 정보통신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여한 멀티미디어 기자재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.**  
**제5조. (연체자에 대한 제재)**

1. 대여 멀티미디어 기자재의 반납기한이 지나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반납시까지 다른 멀티미디어 기자재의 대여를 제2조 4항에 의하여 중지한다.
2. 재학생, 졸업생, 퇴학생 및 제적생으로서 멀티미디어 기자재 반납 연체 시 해당자의 제증서교부 및 제증명서 발급을 중지한다.

**제6조. (변상) 다음 각호의 해당할 때에는 장비를 변상하여야 한다.**

1. 대여 기간 중에 망실 또는 훼손한 멀티미디어 기자재 및 주변기기

**제7조. (변상방법) 전 조에 규정한 변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.**

1. 분실된 멀티미디어 기자재의 변상은 동일한 멀티미디어 기자재로 한다. 그러나 동일한 장비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멀티미디어 기자재 구입 실비의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.
2. 훼손된 멀티미디어 기자재의 변상은 정보통신원에서 제조사 A/S 후 청구된 금액 전액을 보상하거나 대여자가 대여 전의 상태로 복원시켜 반납하여야 한다.